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시설업자의 마약류 사용·취급 장소 제공 시
등록취소 등 근거 마련 〉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49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체육시설업자의 마약류 사용·취급 장소 제공 시 등록취소 등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11
□ 2024년 마약류 범행장소별 단속 현황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6. 6. 26.
3. 회 부 일: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체육시설업자의 마약류 사용·취급 장소 제공 시 등록취소 등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체육시설업자가 마약류의 사용·취급 등을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마약류 관련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후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금지하는 내용임(안 제20조의3, 제32조제2항제8호, 제38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40조제1항제6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의 제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③ (생략)

제38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

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령 또는 <u>정지명령</u>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신 설> ③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u>정지명령</u>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생 략)	-----<u>정지명령(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 ----- ----- 4.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u>정지명령</u>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정지명령(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 ----- -----.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¹⁾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자의 마약류 취급 또는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 등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²⁾,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 10. (생략)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 13. (생략)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 ⑤ (생략)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 6. (생략)

②·③ (생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 12. (생략)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허가나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①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의 사용·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②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대상에 해당 영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23년 6월 발의³⁾되어 2024년 2월 개정⁴⁾된 바 있음.

②·③ (생략)

3)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008호, 제2123011호, 제2123014호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⁵⁾ 및 숙박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해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체육시설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해당 장소·시설 등의 제공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⁶⁾가 마약류의 사용·취급 등을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폐쇄명령,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19. (생략)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② ~ ⑤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 ⑥ (생략)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6)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541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540호)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체육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마약류 범행장소별 단속 현황 통계⁷⁾에 따르면, 유흥업소, 숙박업소와는 달리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범죄가 적발된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련 제재처분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및 관리 특성상 마약 확산 장소로서의 위험도가 높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와 연계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 도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의 사용·취급 등을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7) 2024년 마약류 범행장소별 단속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 경과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 2024년 마약류 범행장소별 단속 현황

[표 3-11] 2024년 범행장소별 단속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장소	마약	향정	대마	전체
합계	100.0	100.0	100.0	100.0
유흥업소	1.2	5.0	2.0	4.3
숙박업소	1.9	10.2	4.1	8.6
가정집	42.9	24.8	25.6	26.4
농기및축사	11.3	0.2	0.8	1.2
선박	0.1	0.0	0.0	0.0
자동차	0.5	3.3	5.0	3.3
노상	4.9	15.7	17.4	15.0
야산	0.4	0.3	0.7	0.3
공항	3.9	3.0	5.6	3.4
부두	0.1	0.0	0.1	0.0
항공기	0.4	0.2	0.4	0.2
사무실	1.6	2.4	1.4	2.2
강변	0.0	0.0	0.0	0.0
해변가	0.0	0.0	0.1	0.0
공장	0.3	0.2	0.4	0.2
상가	2.0	2.4	1.6	2.3
농경지	6.7	0.0	0.5	0.6
기타	22.0	32.4	34.3	31.8

출처: 2024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p.77